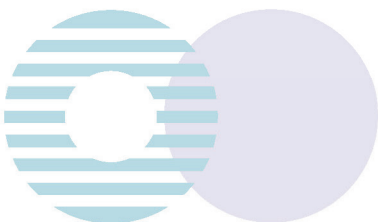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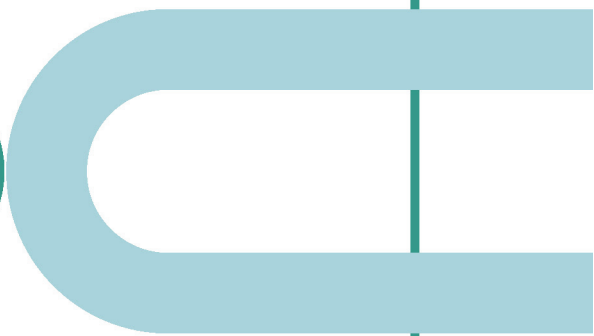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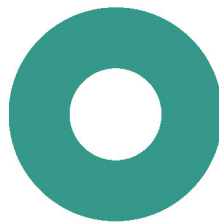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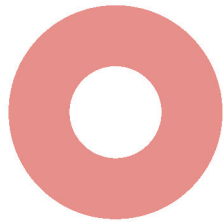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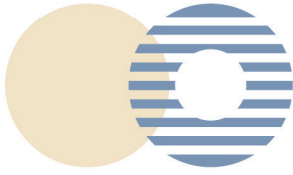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 수상작





CONTENTS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대상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 개요 06

최우수상



08 맞춤형 육아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내 서비스분야- 육아알리미’ 운영

우수상



- 12 아با육아, 출산준비부터 함께 해요
- 15 너.나.들.이 > 서로를 더놓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 19 부담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는 “아빠 자녀돌봄 맞춤형”

장려상



- 26 장애아 및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모해(‘모통이를 비추는 해’라는 뜻의 순우리말) 정책 제안
- 34 비혼가족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
- 36 근로자 자녀 의료보육거점센터 설립
- 41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 즐기기
- 43 아이돌봄서비스 공백 ZERO, 지역 내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활용한 긴급돌봄 신청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 수상작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대상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 개요

■ 목적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육아정책 신규 발굴

■ 주제

- 1)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정책방향(보육취약지역 관련 지원 정책 등)
- 2) 남성 자녀돌봄 지원방안(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
- 3) 기타 육아정책 전반

■ 대상

육아정책 및 사업개발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수상내역

구분	제 목
최우수상	맞춤형 육아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내 서비스분야- 육아알리미' 운영
우수상	아빠육아, 출산준비부터 함께 해요
우수상	너.나.들.이 >서로를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우수상	부담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는 "아빠 자녀돌봄 맞춤형"
장려상	장애아 및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모해('모통이를 비추는 해'라는 뜻의 순우리말) 정책 제안
장려상	비혼가족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
장려상	근로자 자녀 의료보육거점센터 설립
장려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 즐기기
장려상	아이돌봄서비스 공백 ZERO, 지역 내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활용한 긴급돌봄 신청



최우수상

★ **맞춤형 육아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내 서비스분야-육아알리미’ 운영



최우수상

맞춤형 육아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내 서비스분야-육아알리미' 운영



주제3 | 기타 육아정책 전반

사업의 제안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산모들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육아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가족들이 늘고 있음.
- 아이 양육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기별 육아 노하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양육정보를 찾기 위해 각각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비서비스내에 육아알리미를 도입하여 양육정보를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음.
- 가정방문서비스 보다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육아 알림서비스를 통해 초보부모가 아이의 발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함.
-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개월별 육아노하우, 발달정보와 평균체중, 놀이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육아 한마디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사업의 지원 대상

- 출산전 산모
- 영유아 부모(취약계층 포함)

■ 사업의 지원 내용

- 영유아 발달/건강 정보
 - 개월별 발달 정보
 - 표준 체중 및 몸무게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 및 달빛병원 안내
 -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방법 안내(고열일 경우, 열경기, 높은대서 떨어졌을 때 등)
 -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검진 및 평가 안내
- 육아 노하우 및 육아스트레스 관리방법 등
 - 개월별 놀이방법
 - 육아 응원의 메시지, 아동권리 안내
 - 기저귀 가는 법, 아기 목욕시키는 법, 이유식 만들기, 아기변 상태 등
 - 육아휴직 및 아빠육아법 등 안내
 - 육아스트레스 대응방법
 - 육아전문가와 상담&칼럼(분야별 전문가 칼럼 운영)
- 지역 맞춤형 육아정보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찾기
 - 관할 구 육아정보
 - 관할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
 - 장난감 도서 대여, 돌상 백일상 대여 안내 등
 - 지역 놀이터, 미술관, 박물관, 체험실 등 정보
 - 시간제보육실,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안내

■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기존의 국민비서는 아동수당, 유아학비 등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관련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나, 육아알리미 서비스 도입시 지역 및 생년월일 입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육아정보 (예.관할 구 육아정책,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정보, 부모상담, 시간제보육, 장난감대여, 백일상 돌상 대여 등)을 전달과 사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으며, 양육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통해 취약계층(발달지연 영유아, 장애,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의 지원을 도와줄 수 있음.

■ 사업의 기대 효과

- 흩어져 있는 육아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육아정책의 체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초보부모가 아이의 발달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통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제한되고 상업화된 맘카페, 육아커뮤니티에 의존하여 키우는 요즘 세대 초보맘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 시행기관

- 정부부처
- 지방자치단체
- 관할구(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우수상

- ★ **아빠육아, 출산준비부터 함께 해요**
- ★ **너.나.들.이 > 서로를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 ★ **부담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는
“아빠 자녀돌봄 맞춤형”**



우수상

아빠육아, 출산준비부터 함께 해요.



주제2 | 남성 자녀돌봄 지원방안(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

■ 사업의 제안 배경

- 자녀 출산을 앞둔 남성에 대한 지원 필요
 - 현재 출산을 앞둔 산모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혜택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출산을 준비 중인 남성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거나 없는 수준임. 특히, 근로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준비과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육아 서비스 인식 제고
 - 남성의 경우 지역 내 육아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낮았음. 남성도 출산 준비과정에서부터 육아참여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
- 평등한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부족
 - 맞벌이 부부 증가, 가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대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하여 평등한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 시키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지원 대상

-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남성(예비 아버지)

■ 사업의 지원 내용

- ‘예비 아빠 산전 휴가’ 제도 도입
 -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남성에게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출산 이전까지 7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아빠 산전 휴가’ 제도를 도입함.
- ‘예비 아빠 건강키움 바우처’ 제공
 - 예비 아빠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지원금을 제공하여 남성에게도 건강한 출산 준비를 지원함.
 - 바우처 내용은 출산 준비 기간 동안 거주 지역 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용 가능함.
- 가전제품대여 서비스
 - 출산 준비 가정에게 가전제품대여 서비스 제공
 - 기간: 출산 준비 전(임신확인 이후) ~ 생후12개월
 - 품목: 로봇청소기, 젖병소독기, 식기세척기 등(택1)
 - 서비스 신청 시, 예비 아빠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교육’을 제공함.

■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 제공
 - 현재 남성이 육아 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은 여성의 출산 예정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배우자 출산 이전 시기에도 남성 육아휴직을 제공함.
- 출산·육아 지원에 대한 대상 확대
 - 출산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산모(여성)와 아동을 고려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 프로그램도 단기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본 사업은 남성육아맞춤 서비스를 통하여 동등한 부모역할 기회를 제공함.

■ 사업의 기대 효과

-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제고
 - 산전 휴가를 통하여 남성 스스로가 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육아휴직을 독려할 수 있음.

-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 바우처 지원, 가전제품대여 서비스를 통하여 남성도 공동양육자로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육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음.
 - 이를 통한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음.
- 출산을 준비하는 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을 준비하는 남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

▶ 시행기관

- 정부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일과 가정의 양립과 남성 돌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함.
- 지역 주민센터
 - 임신 확인서와 현재 주소지를 확인 후 바우처 지원, 가전제품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업의 협조 필요
 -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되어야하며 이를 인지한 기업들의 협조가 요구됨.

우수상

너.나.들.이 > 서로를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주제 |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정책방향(보육취약지역 관련 지원 정책 등)

▲ 사업의 제안 배경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증가, 폐원 위기 봉착
 - 대한민국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영유아 수 대폭감소
 - 저출산으로 인해 휴·폐원하는 보육기관 증가
 - 어린이집의 규모가 점차 소형화 되어가고 있음>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단체적응이 되지 않아 현장학습에 대한 부담증가, 체험제한
- 다양한 또래와 어울려 놀이할 기회와 경험이 부족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혼합연령 증가, 남녀 비율 파괴, 놀이할 친구가 부족해지는 교실
 - 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연령별 수업지원의 고충, 놀이 확장의 한계가 발생하게 됨.
 - 영아의 경우 발달 단계상 놀이할 또래가 없어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분히 놀이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유아기에는 또래와 놀이하는 경험이 중요함.
 - 그러나 한 교실 안 유아 수가 급감하면서 다양한 놀이와 활동진행이 어려워짐 특히 게임, 동극, 신체 표현 등의 대그룹 활동 진행이 어려움.
- 다양한 놀이 경험 기회 부족_결국 아동의 놀이권이 침해되는 행태임.
 - 유아반의 경우 퇴소가 발생하면 부모들이 놀이할 친구가 없다며 연쇄적으로 퇴소하여 유아 수가 급감하는 사례가 발생함.
 - 폐원의 원인이 됨.

사업의 지원 대상

- 유아
 - 다른 어린이집 친구를 알고 교류하며 함께 놀이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음.
 - 기관별 놀이 주제가 다른데, 다른 어린이집과 교류하며 새로운 주제와 놀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됨.
 - 친구와 사이좋게 놀이하는 방법, 성이 다른 친구와 놀이하는 경험, 견학 시 두 어린이집이 함께 이동하여 풍성한 경험이 가능
- 교사
 -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교류하며 자연스러운 학습공동체 형성 및 교육과정 운영 및 유아지도에 관한 정보공유가 가능함.
 - 교사공동체를 통한 전문성 신장 및 정서적 유대감 강화
- 원장
 - 원아 감소로 인한 불안감 완화
 - 운영비 부담 감소
 - 풍성한 교육과정 운영을 부모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효과

사업의 지원 내용

- 너나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
 - 정기적으로 만남 시간
(예:프렌즈데이 A어린이집 유아들이 B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인사하고 알아가는 시간 만들기)
 - 서로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교실 안에서 함께 놀이하는 시간 경험
- 너나들이: 안부 묻는 시간
 - 유아들이 만든 작품이나 프로젝트 주제 마무리 시 도출된 결과물을 다른 어린이집에 소개하기
(ex: A 어린이집에서 함께 만든 그림책을 B 어린이집에 우편물로 발송 하기→ B 어린이집은 편지나 온라인을 통해 피드백 주기)

- 정기적으로 온라인 만남 갖기
- 카톡 영상전화나 ZOOM을 통해 만나 안부를 묻고 친교의 시간 갖기
- 너나들이: 함께 놀이하는 시간
 - 숲 체험, 키즈카페, 주제 관련 견학지 등에서 만나서 함께 놀이함.
(현장학습을 단체 적용받을 수 있음)
 - 생일 축하 시간 함께하기
 - 매달 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생일파티를 두 기관이 함께하여 더 풍성한 파티를 경험해보기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소규모 어린이집 간 상생> 더 풍성한 경험과 놀이를 지원
 - 두 어린이집이 협력 교류를 맺어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 유아들은 한 어린이집에 속해 있지만 여러주제와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
- 저출산 문제 위기를 타계할 감쪽한 정책>돈이 아닌 작은 아이디어로 해결 모색
 - 현재 어린이집에 봉착한 현실 문제가 정책적으로 간과되고 있음.
 - 폐원 간소화나 재정적인 지원을 논의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의 어려움
 - 소규모 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는 부족함.

사업의 기대 효과

-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
 - 유아: 다양한 또래를 만나 놀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사회성 발달,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
 - 교사: 적은 유아 수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극복 가능, 자연스러운 교사학습, 공동체 형성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 정서적지지
 - 원장: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 가능, 부모교육·현장학습의 선택·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실행 가능

▶ 시행기관

- 위 사업은 다음의 절차가 마련되었을 때 실현 가능함.
 - 교육부·보건복지부 간 기관 협력 운영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문이 공고되어야 함.
 - 기관을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고시되어야 함.
 - 현장학습 방문 시 두 기관이 단체 적용받을 수 있는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는 견학 장소에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단체적용이 가능한 상황임.)
 - 기관 간 협력과 교류에 대한 약속과 실천에 대한 합의 이행서 양식이 갖춰져야 함.

부담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는 “아빠 자녀돌봄 맞춤형”



주제2 | 남성 자녀돌봄 지원방안(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

▲ 사업의 제안 배경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 됨.
 - 한국은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이 64.6%로 낮으며, 결혼 후에도 아내보다 남편의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후 남성의 임금은 가계 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지출 비용은 늘어나게 되나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의 소득보다 줄어들게 됨. 따라서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많았던 가정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현재 아버지 육아휴직 정책은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떨어짐.
 -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만 사용되고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에 대하여 기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남성 육아휴직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보여줌.
 - 더불어, 규모가 큰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승진 등에 대해 고려하여 아버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자녀돌봄 정책이 필요함.
 - 자녀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각 다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신혼부부들 중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육아에 대해 더이상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

으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동시에 남성의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남성의 자녀돌봄과 육아휴직 등은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남성의 커리어와 승진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즉, 남성의 직업이나 직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동시에 남성의 자녀돌봄으로 인하여 승진이나 성과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함.
- 이를 통하여 현재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모두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에서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에 기여하도록 함.

■ 사업의 지원 대상

- 자녀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
 - 자녀 출산에 대해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부부
 - 외벌이(출산 후 외벌이) 부부이나, 근로 시간이 길어 여성이 혼자 자녀를 돌보는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 맞벌이(출산 후에도 맞벌이) 부부로 공동 육아를 계획하고 있으나, 상황상 남성이 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부부
- 현재 자녀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 남성의 근로시간이 길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가정.
 -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남성의 가정.
- 육아휴직 대체자 구인 및 수당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사업의 지원 내용

- 직장 및 직업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녀돌봄 선택 맞춤형 실시
 - 아래의 ①~④의 선택사항 중 상황에 따라 직장상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①~③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나, 여건이 불가능할 경우 ④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구분	세부 내용	필요 사항
① 육아휴직	현재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함. 단, 자녀의 방학 또는 질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함	
② 가족돌봄휴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었을 경우 월 1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누적 가능, 연 12일 제공)	휴직, 휴가, 유연근로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승진, 고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지침 마련
③ 유연근로제	㉠ 시차출퇴근제(07:00~20:00 중 8시간 근무),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중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선택 ㉡ 자녀의 병원 진료 및 긴급 사항으로 인하여 급히 귀가해야 할 경우, 공백 시간만큼 재택근무로 가능하도록 함	
④ 돌봄 지원	㉠ 돌봄인력 지원: 아버지가 위의 휴직, 휴가, 유연근로 중 모두 불가능한 직장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 주 8시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재보다 세제 혜택 강화	

- 자녀돌봄으로 휴직, 공백이 발생할 경우 승진이나 고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
 - 직장에서 매년 고과 등의 평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제도 사용 연도에 한하여 평가 면제 혹은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복직 후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사후 조사 실시(아버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밀보장이 가능한 환경에서 솔직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환경 마련)
-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세제 혜택 부여
 - 관련 비용(돌봄 인력 지원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 부여(보통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 현재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현재 25% 이상의 높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녀 돌봄 비용 지원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 25%이상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이러한 세제 혜택은 기업들로 하여금 남성의 돌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비과세로 처리하도록 함.
 -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에 대하여 25%이상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가능한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녀돌봄에 사용하도록 함.
 - 자녀 방학 일정, 학부모 참여수업 일정, 자녀의 교육기관 운영 시간, 자녀와 함께 입출국한 비행기 출입국 기록, 진료확인서, 자녀돌봄프로그램 참석 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함.
 - 미제출 가능 횟수를 정해두어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함.

■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돌봄 등은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떨어짐.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재조직화 함.
 -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의 기존 정책들을 실제로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있고 실현 가능하도록 재조직화 함. 문서상에만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적 어려움, 승진 누락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
 - 실제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사용하고 싶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승진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개인 평가 3년 유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임.

■ 사업의 기대 효과

- 자녀돌봄 맞춤 선택제를 통하여 아버지의 돌봄 참여 강화
 - 가정과 직장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아버지들이 육아와 관련된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아버지의 자녀돌봄 관련 제도 사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함.
 - 기존 제도들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실제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버지의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제도들의 실효성을 강화함.
- 아버지의 돌봄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가족의 행복 증진
 - 아버지가 돌봄에 참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기업 차원에서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나, 현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부담을 덜도록 함. 이를 통하여 저출산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이 함께 참여하여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부분을 담당
 -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지자체에서 협력하여 금액 지원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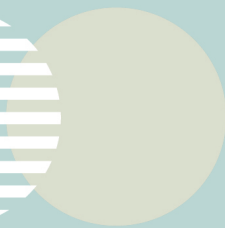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 수상작**





장려상

- ★ **장애아 및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모해
(‘모통이를 비추는 해’라는 뜻의 순우리말) 정책 제안**
- ★ **비혼가족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업**
- ★ **근로자 자녀 의료보육거점센터 설립**
- ★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 즐기기**
- ★ **아이돌봄서비스 공백 ZERO,
지역 내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활용한 긴급돌봄 신청**



장려상

장애아 및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모해(‘모통이를 비추는 해’라는 뜻의 순우리말) 정책 제안



주제1 |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정책방향(보육취약지역 관련 지원 정책 등)

사업의 제안 배경

- 보육취약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 보육의 실질적 이용률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 현재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아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소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위의 표와 같이 장애아보육료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아동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특성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의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자폐성장애큐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큐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으로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그러나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속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개인의 특성과 기질 등 발달의 개인차로 인해 장애를 진단하기 어렵다. 장애위험(At-risk) 영유아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지 못 할 경우 보육기관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가 발현될 상황에 놓인 영유아를 의미한다(이소현, 2003;; Spodek & Saracho, 1994). 2019년 경기도 내 영유아 하위 연령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영유아 중 부모의 신청에 의한 하위 연령반 희망 편성 인원이 2,274 개소 3,358명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보건복지부, 2019; 나보연, 2021),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적절한 발견과 중재, 지원의 부족함으로 일반 보육환경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류혜진, 2022).

- 보육기관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며 장애위험 영유아로 언급되는 아동을 관찰해보면 또래와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 때로는 교사나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방해되는 행동처럼 느껴지고 친구를 사귀거나 협동놀이를 하기보다는 혼자 놀이로 고립되는 모습을 보인다(강혜원, 2015). 이처럼 장애위험 영유아의 문제되는 행동을 감소하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교사의 조기발견과 중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 2023년 7월 보육사업안내의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보육을 위한 장애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이 기본적인 기준이지만 초기 장애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하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후 1년 이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이러한 지정 기준의 완화는 이러한 조기발견 및 조기 중재를 통해 장애위험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미취학 장애아동 2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는 사항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되어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이에 따라 장애아 및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를 통해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해(모통이를 비추는 해의 순우리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의 지원 대상

- 장애아 및 장애위험 영유아, 장애아 및 장애위험 영유아의 가정
 - ‘장애아보육료’ 명칭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특수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명칭을 보다 접근 가능하게 변경해 줌으로서 지원을 거부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장애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
- 비장애 아동 및 부모
 - 장애 및 장애위험 영유아 아동의 전담교사가 배치됨으로서 비장애 아동도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에 일반담임교사의 보살핌과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 비장애 아동의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사업의 지원 내용

- ‘장애아보육료’를 ‘장애아보육료’와 ‘발달지연아동을 위한 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함.
 - 장애아보육료는 장애아동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장애아동 및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의사의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유아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를 인식하는 단계와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울감과 죄책감 사이를 오가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류호영, 김선아, 이성희, 2012), 장애유아가 사회적으로 거부되거나 놀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한다(구다현, 2017). 그러한 이유로 장애를 등록하지 않은채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장애아동 및 장애위험아동을 통합보육교사가 아닌 일반반의 일반보육교사가 담임을 하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다(최은영, 2020).
 - 장애아동 및 장애위험아동을 보육하는 일반반의 일반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장애아동과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 장애통합어린이집의 통합반은 원칙적으로 장애아 진단을 받은 아동이 입소할 수 있으나 의사의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경우 장애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장애위험아동도 통합반에 입소가 가능하고 통합보육교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백선정, 배성현, 최금순, 2020). 그러나 통합반의 전담교사 배치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2명이상 보육하고 있어야 배치가 가능하다.
 - 그러나 ‘장애’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장애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꺼리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아 등록을 한 아동에게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발달지연아동을 위한 보육료’로 명칭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발달지연아동은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더디게 진행되는 아이로 대근육·소근육 운동 기술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중 1가지에서 발달이 느린 경우다.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또래 아동의 발달이정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위험아동의 ‘장애’라는 단어를 단순히 하나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 거부감을 표한다. 위의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사업은 만 6세 이하 아동은 전문가의 예견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만 6세까지 지원하고 있어 언어, 자폐성 문제, 발달의 문제를 겪는 가정에서는 발달재활 사업을 이용하여 치료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발달재활(바우처) 사업이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부모의 접근성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장애 또는 장애 위험을 인지하고도 ‘장애’라는 단어로 인해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를 저해하지 않도록 ‘발달지연아동을 위한 보육료’로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의 틀에 넣는 것이 아닌 ‘지연’이라는 의미로도 장애위험아동 부모의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할 수 있다.

- 장애통합어린이집 선정 기준 완화와 발맞춰 반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 기준 변경 또는 완화.
-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전담교사 배치 기준은 1:3(전담교사:장애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을 겪고 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의 완화에는 이러한 통계적 수치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선지정이 되더라도 장애아동이 1명일 경우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은 8,200여개가 폐원을 하였다. 전체 어린이집의 20% 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5곳 중 1곳이 폐원을 하는 꼴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폐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 감소를 지목했다. 저출생으로 일반아동 모집이 어려워져 폐원을 하고 있는 아동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장애아동 모집은 난관을 겪고 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의 반구성 및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또는 완화는 현장에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구분	현행	제안
반구성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 기본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장애아통합반은 장애기본반과 일반아동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통합반	-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2를 원칙으로하고,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1명의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통합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통합반은 장애기본반과 일반아동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통합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 1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2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이 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이 퇴소하여 구성원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도 2월까지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의 권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한다. 보육기관에 단 한명의 장애 및 장애위험아동이 있더라도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의 통합반 운영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사업
 - 통합보육에서는 비장애아동 부모 인식과 수용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나은희, 2015).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황선훈, 2013). 긍정적 태도를 보고 자란 비장애아동들은 장애아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수 있지만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모들을 보고 자란 아동은 똑같이 부모의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들의 태도는 성공적인 통합보육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제경자, 2011).
 -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부모교육이 활용되고 있으며(최은자, 2019),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양육기술을 가르쳐 주고 습득시킬 체계적인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정주, 이종연, 2014).
 -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장애인식교육을 필수 부모교육으로 지정하고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도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들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중복정책 검토: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바우처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애가 예견되지만 장애미등록 상태인 6세 미만 영유아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이용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가능하다.
 - 지원금은 2023년 기준 25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본인부담금(8만원)이 발생한다.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로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절성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5만원	= 월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리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월 17만원	8만원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 7종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1항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모든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해당 영역별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이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과 교과 과정 및 내용, 학점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사업과 모해 정책제안과의 차별성
 -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사업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나 본 단체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사업의 제공기관이 별도 지정이 되며 제공인력은 영역별 치료사이다. 모해 정책제안의 인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특수교육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은 제공되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자부담이 발생한다. 모해 정책 제안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만큼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특수교육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사업의 기대 효과

- ‘장애아보육료’를 ‘장애아보육료’와 ‘발달지연아동을위한장애아보육료’로 구분해서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위험아동 부모의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할 수 있다.
- 보육기관 내 장애 위험 또는 발달 지연의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장애 전담 교사 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장애아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지원 및 개발, 장애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뿐만아니라 안정적인 장애 보육을 통해 장애영유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기술을 방법을 지원받으며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행기관

-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
 - 현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관련 예산 10조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방침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및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현 정책 제안의 시행기관은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이 바람직하다.
- 지방자치단체
 - 현재 완전한 유보통합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유보통합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장려상

비혼가족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



주제3 | 기타 육아정책 전반

■ 사업의 제안 배경

- 비혼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육아지원 확대
 - 현재 다양한 가족형태(미혼가정,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양육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혼가족에 대한 가족 지원은 제한적임.
 - 비혼가족의 대한 인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복지를 통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가족형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조한 출산률 및 결혼률을 함께 증가시킬 수 있음.

■ 사업의 지원 대상

-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가족
 -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 가족에 대해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
 -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동거가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결혼 자녀에 준하는 양육지원.

■ 사업의 지원 내용

- 동거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및 양육지원
 - 결혼 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동거가족에게 사회적 권리를 인정.

- 법적, 행정적 제도를 정비하여 권고 조항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동거 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비혼가족이 자녀가 출생하면 결혼한 가족에 준하는 사회적 제도(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친화적인 양육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지원.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 현재 다양한 가족형태(미혼가정,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양육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혼가족에 대한 가족 지원은 제한적임.
 - 비혼가족의 대한 인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복지를 통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가족형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조한 출산률 및 결혼률을 함께 증가시킬 수 있음.

사업의 기대 효과

- 출산률 및 결혼률 증가
 -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육아에 대한 지원 관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률이 증가 할 수 있도록 함.
 - 비혼가족에 대해 결혼가족에 준하는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저조한 결혼률이 증가 할 수 있도록 함.

시행기관

- 국회 -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비혼가족)에 대해 가족에 준하는 각종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제정.

장려상

근로자 자녀 의료보육거점센터 설립



주제3 | 기타 육아정책 전반

▲ 사업의 제안 배경

- “애가 아파서..”, “애가 열이나서요...”.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인 부모의 단골멘트.
 - 영유아 보육과 교육 돌봄을 하는 맞벌이 가정의 주된 휴가 나 휴직, 사직의 이유.
 - 자녀가 열이 나면 일하는 부모 중 한 명을 소환하는 보육과 교육기관의 시스템.
- 아픈애를 원에 보내는 맞벌이 엄마를 비난하는 전업 엄마 들 간 사회적 갈등 유발.
 - 열이 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을 보내서 우리애도 아파오는데.. 원에 보내는 것은 맞벌이 가정의 책임이며,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니 자녀들은 원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돌봄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유발.
 - 맞벌이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일을 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국가경쟁력 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정책적 방안 필요.
 -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가정의 붕괴를 막고 아픈아이에 대한 돌봄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함.
- 출생율이 증가하는 지역은 경력단절여성도 증가함.
 - 자연증가율이 높고 전국에서 ‘홀로’플러스 출생율을 보이는 세종시의 경우, 안정적인 보육(국공립어린이집 33%)·교육환경(국공립 유치원 97%)임에도 불구하고 1만7884명의 경력단절 여성 중 35세~39세 비율이 가장 많으며, 단절의 주된 이유는 25세 44세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크게 증가했지만 1년이내 그만두는 경우가 다수임. 90년대 이후 세대는 “육아 및 일 병행”이 어려운 점으로 가장 큰 이유임(“지난해 전국 ‘경력단절여성’ 약 140만명... 충청권 17만명 달해”, 충청일보, 2023.07.24.).

- 경력단절여성이 충청권지역에 많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2년 출생율이 증가하여 인구증가 유공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음.
- 아픈 영유아의 의료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어디에도(지역) 없고 어느 곳(정부 부처)에도 없음
 - 맞벌이 지원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픈 아이의 의료적 지원임.
 - 매일아픈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가끔 아픈 아이들의 부모를 소환하여 맞벌이 부모의 퇴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
- 보육 교육기관에서 가끔 아픈 아이들이 긴급하게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육 거점센터 필요.
 - 기관에 있는 영유아가 갑자기 아프거나 열이 나면 일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 중 한 명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과 동행하여 거점의료기관(지역 내 지정 소아과)으로 의료보육 이동 차량으로 지정된 택시 및 공유교통서비스를 활용하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료적 보육센터 설립이 필요함.
 - 출근해야 할 아침에 아이가 아픈 경우 의료보육 거점센터에 보육신청하여 당일 보육가능하도록 지원.
- 안정적인 보육·교육환경에도 출생율이 높지만, 경력단절여성의 증가도 높은 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이유가 있음.

사업의 지원 대상

- 근로자(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등), 자영업자, 공무원 등 확인 가능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지원.
 - 근로자의 전속성이 폐지(2023.07.01.)됨으로 근로자의 개념이 확대되었고, 대다수 국민이 근로자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맞벌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 어느 직업, 소득 등 조건을 두지 않고, 가능하면 많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낮아 의료보육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내 소아과 인근 또는 소아과 내에 의료보육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그 의료진 지원.
 - 소아과 의료진이 의료보육거점센터로 이송된 영유아를 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소아과 및 의료진에 지원(각 부처마다 인센티브제공 및 각종보험료 지원등).

- 의료보육거점센터로 이동 가능한 교통수단의 운수업체 및 운수자 지원.
 - 각각의 보육·교육기관에서 의료보육 거점센터로의 이송은 각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과 동행하여 사전 지정된 운송수단으로 이송.
- 의료보육으로 이송되는 영유아는 각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과 필수동행으로 간호인력지원.
 - 의료보육거점센터에 이송 시 낯선 환경을 거부하는 영유아의 경우 평소 생활을 같이 하는 간호인력과 함께 동행 시 거부감을 해소.

■ 사업의 지원 내용

- 맞벌이 자녀들을 보육·교육 기관에서 아픈아이가 있을 경우 부모동의 하에 의료보육거점 센터로 이송.
 - 지역 내 지정된 소아과 인근(의료진이 바로 진료가능한 거리) 및 소아과 내 의료보육거점센터로 각 기관의 간호 인력과 동행 이동하여 상시로 의료진이 진료 후 응급할 경우 부모 소환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단순 약 처방으로 처치 가능하면 거점센터에서 보육 후 맞벌이 부모 퇴근 후 자녀 인계.
- 각 기관에 간호 인력 필수 배치
 - 영유아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 및 남성등 간호사인력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에 배치하고 급여 및 인사관련 통일 관리체계 지원.
 - 각 기관에서 간호인력이 평상시 아이들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
- 의료보육거점센터로 이송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
 - 미리 지정된 택시 및 공유교통수단을 통해 각 기관 및 가정에서 신청시 즉시 우선 배차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동수단 외부에 의료보육지정차량 안내판 설치지원.
 - 정부부처 및 시군구 예산을 통해 이송료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및 우선적용.

사업의 차별성

- 저출생은 한곳의 부처 사업으로 해결 불가능.
 - 영유아의 보육과 간호와 의료진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교육에 관련된 교육부, 맞벌이 부모의 고용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이송수단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및 의료시설 관련된 시군구 지자체 등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임.
 - 관련된 부처의 혼합형태로 센터를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기관 설립
- 의료적 보육
 - 자녀의 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의료적 보육센터의 운영 설립 자체가 차별성임.
 - 부모의 항의와 민원 등 책임소재들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보육·교육기관 입소 시 응급의료기관 선택지에 법률 검토된 문항으로 동의서 추가하여 의료보육 희망동의서 작성한 부모의 자녀만 의료보육 거점센터로 이송.
-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의료보육거점 센터 성격의 기관은 없음.

사업의 기대 효과

-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인 고용기회 및 근로환경 제고.
 - 근무시간 내 갑작스런 휴가 및 휴직을 하지 않고 일·육아 병행가능.
 -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이 감소할 수 있는 방안.
 - 육아로 인해 부부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출생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
- MZ 세대들에게 출생 후 안정적인 근로가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
 - 출생 후 육아는 힘들고, 일을 할 수 없거나 퇴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삭제 하고,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나라임을 인지하고 결혼 및 출생을 고려하게 함.
- 가하는 경력단절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고,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안정적인 생활로 출생율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보육거점센터 설립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센터의 설립으로 센터에서 상시근무하는 필수 인원의 일자리 창출.
- 퇴사를 예방하여 생산가능인구 증가
 -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과제임.
- 맞벌이와 전업 인구의 갈등(맞벌이 아픈아이가 등원하여 내아이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상황)을 해소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좋은 지원 정책임.

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과 각 시군구 협력 운영.
 - 거점센터이므로 설치되는 지역의 협력이 아주 중요함.
 -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해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일.
 - 기존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공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여성고용촉진을 위해 지원하며, 산재 근로자의 의료지원으로 의료비 및 보상에 관련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각 지원가능한 의료 기관과 운수업체, 간호인력 등 지원과 관련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등 각종 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전국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함.
- 시범지역
 - 자연인구증가율이 높고, 출생율이 높으며,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높은 세종시에 시범 설립 운영.
 - 시범운영 후 의료보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정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용이 원활하게 될 경우 전국확대운영.
-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범 부처간 적극적 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해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

장려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 즐기기



주제2 | 남성 자녀돌봄 지원방안(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

▲ 사업의 제안 배경

- 양육에 서툰 아버지를 위한 일상 활동 제공
 -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
 - 어머니 위주의 양육방식에 아버지가 참여하기 불편한 상황 존재

▲ 사업의 지원 대상

- 아버지 육아휴직 대상자, 한부모(아버지) 가족 보호자
 - 직장 내 아버지 육아휴직 대상자
 - 한부모 가족 아버지
- 영유아
 - 아버지가 양육중인 영유아

▲ 사업의 지원 내용

- 아버지 양육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및 지역화폐 제공
 - 지역 내 영유아가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제공
(어린이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키즈카페, 어린이박물관 등)
 - 지역화폐 제공
(어린이를 위한 물품구입-문구 및 완구 구입)

▲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아버지 양육자를 위한 일상 속 활동꺼리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함.

▲ 사업의 기대 효과

- 양육에 서툰 아버지를 위한 일상 활동 제공
-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 누리기

▲ 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아이돌봄서비스 공백 ZERO, 지역 내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활용한 긴급돌봄 신청



주제1 |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정책방향(보육취약지역 관련 지원 정책 등)

▲ 사업의 제안 배경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거나 감염병 증상을 보일 경우 맞벌이 가정인 경우 바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어린이집에서는 해열제를 비치할 수 없으며, 투약의뢰서를 받고 투약을 해야 해 열이 오르는 경우 바로 대응하기 어려움. 맞벌이 가정인 경우 직장 내 업무로 인해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많음.
- 바로 어린이집에 올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교육보육기관에서 긴급돌봄보육 서비스를 신청해 한아의 1:1 케어를 가능하게 하고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모
 - 맞벌이 부부가 업무 중에 바로 하원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를 케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영유아가 아픈 경우 또는 전염질환으로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함.

■ 사업의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 구성
 - ‘자란다’, ‘째깍악어’ 등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만들어 현재 휴직 중인 보육교사 인력을 활용해 긴급돌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보육교사 인력풀 구성 및 인력비 지원
 - 기관과 유휴인력 보육교사를 연계해주는 어플 구성 비용과 지원하는 인력의 비용을 지원
- 어플을 통해 기관과 유휴인력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한아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신청이 가능함.
- 부모의 의사에 따라 병원 방문 또는 어린이집에서 케어 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어린이집에 도착할 때까지 병원 방문, 투약, 낮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아이돌봄서비스 중 기관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 기관에서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으며 기관연계서비스 비용이 1인당 18,480원으로 기관이 비용을 들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긴급돌봄이며, 기관에서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 부가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함에 있어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해 영유아의 건강과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이돌봄서비스 중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가 있긴 하나 부모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바로바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음.
 -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보육교기관에서 직접 긴급돌봄을 신청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으나 현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은 유휴인력 인력풀을 만들어 프리랜서처럼 긴급보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함.
 - 부모들은 일련의 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이 아동을 맡아 케어하고, 긴급할 때 이용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 사업의 기대 효과

-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감소
 - 아이가 아플 때 검증된 인력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 기관에서 환아 케어 부담 감소
 - 환아가 있는 경우 보육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음.
- 추가 일자리 조성
 - 정기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보육교사에게 대체 일자리를 마련해줄 있음.

▲ 시행기관

- 지자체에서 보육인력풀을 수집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함
- 공공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플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원함.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연락처 02) 398-7700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